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9.

제 안 자 : 환경노동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심사 경과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	경과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4716호)	정부	2024. 10. 16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5506호)	김소희 의원	2024. 11. 13.	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 회의(2025.1.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 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6705호)	권칠승 의원	2024. 12. 19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7027호)	이학영 의원	2024. 12. 27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8835호)	김형동 의원	2025. 3. 12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 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
나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(2025. 9. 17.)에서
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
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, 제
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(2025. 9. 19.)
에서 이를 심의·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
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
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또한 공동주택, 어린이집,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
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할 때는 최근 발생한 인명피해 사례를 고려하
여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.

아울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
리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
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, 「행정기본법」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
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
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
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(안 제27조의2제2항제2호).
- 나.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 기준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, 공동주택·어린이집·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며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, 준수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14조의5, 제14조의8 및 제66조제3호의3).
- 다.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(안 제25조제14항·제15항·제16항)
- 라.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서 3개월로 설정함(안 제14조제8항제3호).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8항제3호 중 “영업정지”를 “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”로 한다.

제14조의5제1항 중 “안전사고”를 “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·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8(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) 공동주택, 어린이집,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·운영할 것
2. 입주자,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
3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

4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

제25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”을 “허가·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5항 중 “변경허가·변경신고의”를 “변경허가·변경신고·적합성확인의”로, “신청 또는 변경신고를”을 “신청,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6항 중 “허가·변경허가를”을 “허가·변경허가·적합성확인을”로 한다.

4. 제2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

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“1년”을 “정당한 사유 없이 1년”으로 한다.

제66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제14조의8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

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 ~ ⑦ (생략) ⑧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영업정지</u> ,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4. ~ 7. (생략) ⑨ · ⑩ (생략)	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--- ----- -----. 4. ~ 7. (현행과 같음) ⑨ · ⑩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·운	제14조의5(생활폐기물 수집·운

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환경
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
하여 수집·운반차량과 안전장
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
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
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
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기준”이
라 한다)을 마련하고 매년 안
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
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<신설>

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----
-----환경미화원 및 주민
의 안전사고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
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·
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
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자에
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
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4조의8(공동주택 등 생활폐기
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)
공동주택, 어린이집, 학교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
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
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
준수하여야 한다.

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
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
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
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
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
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
 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
 ·도지사의 적합 통보·허가
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·
 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
 으로 본다.

<신 설>

1.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
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
설치·운영할 것
2. 입주자, 학생 등의 안전을
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
조치를 할 것
3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
이상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
것
4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
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

(14) -----

-----허가·변경
허가 또는 적합성 확인을-----

4. 제2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

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·도지사의 적합 통보·허가·<u>변경허가·변경신고의 의제(擬制)</u>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,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신청, 변경허가 <u>신청 또는 변경 신고</u>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⑯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적합 통보·<u>허가·변경허가</u>를 하거나 <u>변경 신고</u>를 받으면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 ⑰ (생략) 제27조의2(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) ① (생략)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<u>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</u> ⑮ ----- ----- -----<u>변경허가·변경신고·적합성확인</u>의-- ----- ----- -----<u>신청,</u> <u>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</u>을----- ----- -----. ⑯ ----- ----- ----- -----<u>허가·변경허가·적합성확인</u>을----- ----- -----. ⑰ (현행과 같음) 제27조의2(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
---	---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등록을 한 후 <u>1년</u> 이내에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(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) 3. ~ 9. (생략) 제6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3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3의3.</u> (생략) 4. ~ 19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정당한 사유 없이 1년</u>----- ----- ----- ----- 3. ~ 9. (현행과 같음) 제66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<u>3의3. 제14조의8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</u> <u>3의4.</u> (현행 제3호의3과 같음) 4. ~ 19. (현행과 같음)
--	---